

9급/7급 공무원 가산점 적용

가.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

구 분	가산비율	비 고
취업지원대상자	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	·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· 취업지원대상자/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·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'나~라' 참고
의사상자 등 (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)	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3%	
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	과목별 만점의 3~5% (1개의 자격증만 인정)	

※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·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.

나.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
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과목별 득점에 위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-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과목별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0%/5%/3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- 국가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%(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%)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※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(보훈처 상담센터 ☎ 1577-0606)으로,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(044-202-3255)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

- 행정직 :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, 과목별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%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직렬(직류)	가산대상 자격증
행정직(일반행정·선거행정)	변호사, 변리사
행정직(재경)	변호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
행정직(교육행정)	변호사
행정직(회계)	공인회계사
행정직(고용노동)	변호사, 공인노무사, 직업상담사 1급, 직업상담사 2급(단, 7급은 3% 가산)
직업상담직	변호사, 공인노무사, 직업상담사 1급, 직업상담사 2급(단, 7급은 3% 가산)
세무직	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
관세직	변호사, 공인회계사, 관세사
감사직	변호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세무사
교정직·보호직·철도경찰직	변호사, 법무사
검찰직·마약수사직	변호사, 공인회계사, 법무사
통계직	사회조사분석사 1급, 사회조사분석사 2급(단, 7급은 3% 가산)

- 기술직 :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(전산직은 제외)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(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「공무원 임용시험령」 별표 12를 참조)

구분	7 급		9 급	
	기술사, 기능장, 기사 [시설직(건축)의 건축사 포함]	산업기사	기술사, 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 [시설직(건축)의 건축사 포함]	기능사 [농업직(일반농업)의 농산물품질관리사 포함]
가산비율	5%	3%	5%	3%

라.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

- 7-9급 공채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(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)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해야 합니다.

※ 가산점 등록기간 : 7급 2020.8.22.(토) ~ 8.24.(월), 9급 2020.3.28.(토) ~ 3.30.(월)

※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9/7급 공무원 가산점 안내(간호/보건/식품 분야)

직렬	직류	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	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
보건	보건	<p>기술사 : 산업위생관리, 대기관리, 수질관리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, 식품, 방사선관리, 광해방지, 인간공학</p> <p>기사 : 산업위생관리, 대기환경, 수질환경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, 식품, 광해방지, 인간공학</p> <p>산업기사 : 산업위생관리, 대기환경, 수질환경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, 식품</p> <p>기능사 : 식품가공</p> <p>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</p>	<p>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: 의사, 한의사, 치과의사, 수의사, 약사, 한약사,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(특수, 일반), 방사선 취급감독자, 응급구조사 1급, 보건교육사 1급</p> <p>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: 임상병리사, 의무기록사, 방사선사, 간호사, 조산사, 물리치료사, 치과기공사, 치과위생사, 작업치료사, 위생사, 영양사, 응급구조사 2급, 보건교육사 2급</p> <p>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: 보건교육사 3급</p>
	방역	-	<p>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: 의사, 수의사, 약사, 응급구조사 1급</p> <p>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: 임상병리사, 의무기록사, 간호사, 위생사, 응급구조사 2급</p>

<p>의료기술</p>	<p>의료기술</p>	<p>기술사 : 방사선관리</p> <p>기사 : 의공</p> <p>산업기사 : 의공</p> <p>임상심리사 1급</p> <p>임상심리사 2급</p>	<p>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:</p> <p>의사, 한의사, 치과의사, 약사, 한약사,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(특수, 일반), 방사선 취급감독자, 응급구조사 1급</p> <p>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:</p> <p>임상병리사, 방사선사, 물리치료사, 치과기공사, 치과위생사, 작업치료사, 의무기록사, 간호사, 조산사, 응급구조사 2급, 의지·보조기기사</p>
<p>식품위생</p>	<p>식품위생</p>	<p>기술사 : 축산, 수산제조, 품질관리, 포장, 식품</p> <p>기사 : 축산, 수산제조, 품질경영, 포장, 식품</p> <p>산업기사 : 축산, 품질경영, 포장, 식품</p> <p>기능사 : 축산, 식육처리, 식품가공</p>	<p>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:</p> <p>영양사, 위생사</p>